

##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(1)

① 과세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② 상 호 (사업자등록번호)		③ 성 명	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	--

### 기업업무추진비 등 명세

④ 계 정 과 목					합 계
⑤ 계 정 금 액					
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	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(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의 지출금액 등 포함)				
	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	⑦ 1만 원 초과 (21년 지출분부터는 3만 원 초과) ※ 경조금은 20만원 초과			
		⑧ 1만 원 이하			
		⑨ 현물기업업무추진비			
		⑩ 계(⑦ + ⑧ + ⑨)			
⑪ 계( ⑥ + ⑩ )					
필요경비 부인액	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(⑦)				
	⑬ 기 타				
	⑭ 계 ( ⑫ + ⑬ )				
⑮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(⑪ - ⑭)					

## 작성 방법

[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1)]

-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: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(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), 현금영수증 거래분과 계산서·세금계산서 거래분,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,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기업업무추진비 또는 농·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(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⑦ 1만원 초과(경조금은 20만원 초과)란 및 ⑧ 1만원 이하란: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(현물기업업무추진비는 제외합니다)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(20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).
- ⑬ 기타란: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,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
##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2)

① 과세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		③ 성 명	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	-------	--

### 1.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

									금 액	
④ 1천200만원(중소기업은 3천600만원) × 과세기간월수( )/12										
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	총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× 30/10,000(2020년 지출분은 35/10,000)							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× 20/10,000(2020년 지출분은 25/10,000)								
		500억원 초과 금액 × 3/10,000(2020년 지출분은 6/10,000)								
		⑤ 소 계								
	일반수입금액 기준	100억원 이하의 금액 × 30/10,000(2020년 지출분은 35/10,000)								
	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× 20/10,000(2020년 지출분은 25/10,000)								
		500억원 초과 금액 × 3/10,000(2020년 지출분은 6/10,000)								
		⑥ 소 계								
	⑦ 특수관계 관련 수입금액		(⑤ - ⑥) × 10/100							
	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(④ + ⑥ + ⑦)									
문화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(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 136조제3항)	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									
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(⑨와 (⑧×20/100)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)										
⑪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 (⑧ + ⑩)										
⑫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[명세서(1)의 ⑮]										
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(⑫ - ⑪)										
⑭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 (⑪과 ⑫ 중 적은 금액)										

### 2. 기준수입금액 명세

⑮ 일반수입금액	⑯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	⑰ 총수입금액 (⑮ + ⑯)

## 작성 방법

[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2)]

1. ④란 작성 시 중소기업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) 외의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을 적용합니다.
2.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⑰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, 일반수입금액은 ⑱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 이하,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, 5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·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3.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(⑨·⑩)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4. ⑫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1)의 ⑮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5. "2. 기준수입금액명세"의 ⑱ 일반수입금액 및 ⑳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습니다.